#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23. 2. 13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29/compare?from=1279&to=142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21:0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2조(적용범위)**<br>삼육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 | **제2조(적용범위)**<br>삼육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 단,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 〈개정 2023-02-13〉 |
| **제5조(구성)**<br>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 〈개정 2018-02-28〉<br>① 위원장은 대학원장,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.<br>② 위원은 대학원장, 신학대학원장, 경영대학원장, 임상간호대학원장, 대학원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재무실장, 학과장 2인,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.<br>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| **제5조(구성)**<br>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 〈개정 2018-02-28〉<br>① 위원장은 대학원장,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.<br>② 위원은 대학원장, 신학대학원장, 경영대학원장, 임상간호대학원장, 대학원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재무처장, 학과장 2인,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.<br>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|

## 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**「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> 제2조(적용범위) 삼육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 단,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재무실장"을 "재무처장"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